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05

발의연월일: 2021. 4. 12.

발 의 자: 권명호·정희용·박대수

정진석 · 강민국 · 이철규

임이자 • 윤창현 • 김형동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 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 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99조의9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9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9조의9(위기지역 창업기업에	제99조의9(위기지역 창업기업에
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위	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
기지역에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4년 12월 31일</u>
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	
업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	
상사업"이라 한다)으로 창업하	
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	
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	
며,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	
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	
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	
다)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	
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	
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	
한다.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